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 조에 따라 위탁한 권한(업무의 내용)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.고시합니다. 2018년 7월 2일

(2,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## 위탁기관 지정

## 이타하 어디이 이타기과

	1. 위탁한 업무의 위탁기관		위탁기관	
	위탁업무의 내용	관련 법령	귀덕기천	
,	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한 다음 각목의확인 가.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나.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.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.법인합병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접수 및신고내용의확인	건설산업 기본법 시 행령 제87 조제1항	대한건설협회	
	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 가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, 그 내용의 확	건설산업 기본법 시 행령 제87	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 업종	
조기				대한전문건 설협회
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 가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		조제18 제6호	기계설비공사업, 가 스시설시공업	대한설비건 설협회
			시설물유지관리업	(사)대한 시설물유 지관리협 회